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2011.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 례

| | |
|--------------------|---|
| I. 제 출 배 경 | 1 |
| II. 작 성 방 향 | 5 |
| ① 공 직 선 거 법 / 5 | |
| ② 정당법·정치자금법 / 8 | |
| III. 개 정 의 건 | 9 |

공 직 선 거 법

- ①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국회의원 선출방법 개선 / 9
- ② 후보자선출과정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경선제도 개선 / 12
- ③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 16
 - 1. 국외선거법에 대한 재판관할의 명확화 / 16
 - 2. 중대 국외선거법에 대한 여권발급 등 제한 / 16
 - 3.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외국인의 입국 제한 / 18

④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절차사무의 합리적 개선 / 19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1.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순회접수 / 19
2. 재외선거인등의 등록신청·신고기간 확대 / 20
3. 제한적 우편투표 허용 / 20
4. 공관 외의 장소에 투표소 설치 / 21
5.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 / 21
6. 재외투표소 본인확인 신분증 범위 확대 / 22

재외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합리적 개선

1. 재외위원회 설치대상 공관의 조정 / 23
2. 재외위원회 설치·운영기간 특례 마련 / 23
3.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위원회 위원 배제 / 24
4. 재외투표관리관 자격 완화 / 24
5. 천재지변 등에 대비한 사무처리절차 마련 / 25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등의 개선·보완

1.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등과 관련한 서류의 전산송부 / 26
2. 정확한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국가 의무 부여 / 26

3. 재외선거인명부 열람 방법 확대 / 27
4.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사본교부 제한 / 27
5. 공관을 통한 재외선거인명부등의 등재여부 확인 / 27
6.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첨부서류 개선 / 28
7. 중복 등록신청·신고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 / 29
8.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작성기준일 명확화 / 29

국외선거운동과 투표·개표 절차 등의 보완

1. 위성방송시설 확대 및 불합리한 규정의 정비 / 30
2.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 조정 / 30
3. 자서식 투표방법의 명확화 / 31
4. 재외투표 참관방법 등의 개선 / 31
5. 재외투표의 출구조사 금지 / 32
6. 재외투표의 국내회송 불능시 처리절차 마련 / 32

⑤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선거권 조정 / 33

⑥ 돈 선거 근절을 위한 금품관련 선거범죄 제재 강화 / 34

1. 매수목적 금품운반죄의 처벌대상 및 기간 확대 / 34
2. 금품수수 행위의 50배 과태료 적용대상 확대 / 34
3. 매수죄의 공소시효 연장 / 35
4. 금품 전달자의 자수자 특례 적용 / 35

㉞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과 공정성 확보의 조화 도모 / 36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을 위한 규제의 완화

1. 단체 및 언론기관의 대담·토론 활성화 / 36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기간제한 폐지 / 37
3. 비정규교육경력 게재의 제한적 허용 / 38

선거의 공정성 확보 강화

1. 인터넷 언론의 불공정 보도 확산 차단 / 38
2. 선거관련 여론조사의 신뢰성·객관성 제고 / 39
3. 보궐선거등에 있어서 부재자투표소 설치 / 40

㉟ 국민불편 해소와 선거참여 확대를 위한 편의 증진 / 41

1. 공개장소 연설·대담관련 녹음기·녹화기 사용 제한 / 41
2.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 사용전화 신고 / 41
3. 통합선거인명부 활용을 통한 투표편의 제공 / 42
4. 투표용지의 투표소 현장 발급 / 43
5. 인터넷이용 부재자신고 및 선거인명부 등재 확인 / 43
6.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음성형 선거공보 작성 허용 / 44

㉑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개선·보완 / 45

1. 종합편성채널의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시설 포함 / 45
2.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방법 개선 / 45
3. 그 밖에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 / 46

정당법 · 정치자금법

① 정당활동 자유보장의 실효성 확보 / 50

1.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확대 / 50
2. 정당 명칭의 사용 제한 / 50
3. 위법하게 당원 등이 되어 활동한 자에 대한 제재 / 51

②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근거 마련 / 51

③ 정당사무의 합리적 개선 / 52

1. 중앙당의 당원명부 전산관리 근거 마련 / 52
2. 과태료 부과 · 징수규정 정비 / 52

④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 52

1. 고액 당비 공개제도 도입 / 52
2. 회계보고의 자체감사 대상 확대 / 53
3. 회계보고서의 인터넷 공개 범위 확대 / 53
4. 선거비용 수입 · 지출 내역 확인의 실효성 강화 / 53
5. 선거관리위원회 회계사무처리 확인 · 점검 근거 명문화 / 54
6. 정치자금범죄 자수자 특례규정 신설 / 54

⑤ 정책연구소에 경상보조금 직접 지원 / 55

⑥ 정치자금사무의 합리적 개선 / 55

1. 연간 모금한도액의 합리적 개선 / 55
2.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규정 명료화 / 55
3. 후원금 입금의뢰인 인적사항 조회대상 금융기관 확대 / 56
4. 불필요한 후원회 해산신고 정비 / 56
5. 교육감·교육위원 등 선출과 관련한 기부제한 삭제 / 56
6. 회계보고서의 첨부서류 제출규정 정비 / 56
7. 선거비용관련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서 송부근거 마련 / 57
8. 반환·보전 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인계일자 통일 / 57

I. 제 출 배 경

- 「공직선거법」은 우리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선거제도 및 기본권에 내재하는 자유선거의 원칙과 선거운동 기회균등 원칙의 조화로운 실현을 위하여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이는 과거 선거가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지 못하고, 금권·관권선거 등 부정선거와 선거과열로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켰던 경험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출발, 선거부정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하여 민주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국민적 의지를 담은 것으로 그동안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면서도 그 기본정신은 유지되어 오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적·사회적 발전과 국민의식의 성숙에 따라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변화하고 있는바, 먼저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부정방지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중심의 법제를 지양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변화된 선거환경을 제도적으로 수용하여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수단을 확대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조화되는 가운데 선거가 국민의 정치참여기제로써 가지는 의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현대정치의 핵심기제로 자리잡은 정당제도에 있어 정당간 경쟁이 지역독점구도 속에서 정책경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현행 선거제도가 지역주의와 결합되어 정당의 지역편중현상을 고착시키고 선거의 과열을 불러일으키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국회의원선거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의 개혁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바, 이는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이 공직선거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현실과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과정에 보다 많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아울러 재외국민의 오랜 숙원인 재외선거제도의 도입 이후 재외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편의 제공방안과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특히 국외에서 벌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의 마련 그리고 모의재외선거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관리절차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임.
- 한편,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당활동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당의 정책개발 촉진과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치자금의 적정하고 원활한 조달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의 정치자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수입·지출내역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긴요하다 할 것임.
- 이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정치의 오랜 폐단으로 지적되어 온 지역주의 완화를 위하여 국회의원선거제도를 개선하고, 당내 공천과정에 보다 많은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외선거의 편의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방안과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선거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및 지난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개선, 정당활동 보호의 실효성 확보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의견을 마련,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 (법령에 관한 의견표시등)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것임.

Ⅱ. 작 성 방 향

① 공직선거법

첫째, 지역주의 완화를 위하여 국회의원선거에서 같은 시·도에 입후보한 복수의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를 비례대표후보자명부의 같은 순위에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평균 유효득표수대비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는 당선되도록 하는 ‘지역구결합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그 대표성 확보를 위해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최저득표율을 설정하고, 선거결과 지역주의가 두드러지는 지역에만 적용되도록 하였음.

둘째,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 당내경선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같은 날 동시에 경선을 실시하는 ‘국민경선’을 도입하였음.

셋째,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외선거법에 대한 여권발급 및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음.

넷째,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재외선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순회접수, 공관 외의 장소에 추가 투표소 설치, 파병군인 등의 우편투표를 허용하며, 그 외에 재외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국외선거 운동 및 투표·개표와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선거참여 범위를 조정하였음.

다섯째, 금품관련 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매수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단체와 언론 기관의 대담·토론회가 활성화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 선거보도의 확산을 차단하고,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강화하였음.

여섯째, 선거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는 기간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신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보궐선거등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음.

일곱째, 선거와 관련한 일반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녹음기·녹화기 사용의 제한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억제하였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음성형 선거공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공직선거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보완하였음.

② 정당법 · 정치자금법

첫째, 정당활동 자유의 보장과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특정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익광고 근거를 마련하였음.

둘째,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고액 당비납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회계감사 및 공개범위를 확대하며,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연구소에 직접 경상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그 밖에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 보완하였음.

Ⅲ. 개 정 의 건

공 직 선 거 법

①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국회의원 선출방법 개선

1. 정당의 후보자추천

-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 정수에도 불구하고 시·도별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 중에서 2명 이상을 비례대표후보자명부의 같은 순위에 추천할 수 있도록 함 (이하 ‘지역구결합 비례대표후보자’라 함).
- 지역구결합 비례대표후보자를 추천한 해당 순위에는 다른 비례대표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함.
- 서로 다른 시·도의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를 같은 순위에 지역구결합 비례대표후보자로 추천하거나, 지역구결합 비례대표후보자를 추천한 해당 순위에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아닌 자를 함께 추천한 경우 및 1명의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만을 추천한 경우 해당 순위의 비례대표후보자 등록은 무효로 함.

- 지역구결합 비례대표후보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을 납부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로서의 기탁금은 납부하지 아니함.

2. 지역구결합 비례대표후보자의 당선인 결정

-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해당 시·도의 국회의원지역구 수의 1/3에 미달하는 정당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지역구결합 비례대표후보자를 추천한 순위의 당선인은 1명으로 함.

- 지역구결합 비례대표후보자의 당선인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지 아니한 자로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중에서 결정하되,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후보자의 득표수를 그 지역구 평균유효득표수로 나눈 수(이하 ‘평균유효득표수대비 득표율’이라 함)가 가장 큰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그 중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함.

※ 지역구 평균유효득표수는 해당 지역구에서 3%이상 득표한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산정함.

3. 지역구결합 비례대표 당선인의 결원시 의석승계

당초 선거에서 같은 순위에 추천을 받은 지역구결합 비례대표 후보자 중에서 평균유효득표수대비 득표율이 높은 순에 따라 의석을 승계하고, 그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없는 때에는 비례대표 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의석승계자를 결정함.

제안이유

지역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도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지 못했으나 그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후보자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당선된 국회의원이 지역주민과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선거에서의 지역주의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② 후보자선출과정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경선제도 개선

1. 전국 동시 ‘국민경선’ 실시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한함)에서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 당내경선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은 날 동시에 경선을 실시함(이하 ‘국민경선’이라 함).
- 국민경선의 경선일은 대통령선거는 본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그 외의 선거는 본선거의 선거일 전 4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로 함.
- 정당은 경선일 전 10일까지 위탁을 신청하도록 하되, 국민경선이 아닌 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선은 위탁할 수 없도록 하며,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모두 참여한 경우에만 국민경선을 실시함.

2. 경선 선거인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본선거의 선거권이 있고, 경선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대통령선거는 경선일 전 28일, 그 밖의

선거는 경선일 전 19일) 현재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은 모두 경선 선거권을 부여함.

- 다만, 정당이 국민경선 위탁을 신청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후보자추천에 반영되는 경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경선에 참여한 사람은 국민경선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함.
- 경선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작성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경선선거인명부를 전자파일 형태로 전국단위로 통합하여 작성하도록 함.

3. 경선 후보자 등록

경선 후보자등록신청 접수는 정당이 자율적으로 하되, 경선일 전 5일까지 경선후보자명부와 기호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4. 경선운동

- 현행 비당원 참여 당내경선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경선홍보물은 매세대에 발송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경선일에는 일체의 경선운동(예비후보자로서 하는 선거운동을 포함함)을 할 수 없도록 함.

5. 경선투표

- 경선투표소는 읍·면·동마다 읍·면·동사무소 등에 1개소씩 설치하되, 관할 구역 안에서 국민경선이 실시되지 않는 구·시·군에는 경선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음.
- 경선선거인은 주소 또는 거소에 불구하고 자신이 투표하기 편한 투표소에 가서 자신이 참여하고자 하는 하나의 정당을 선택하여 경선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함.
-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경선투표용지는 별도로 인쇄하지 아니하고 투표소에서 프린터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발급함.

6. 경선개표

- 경선개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취합하여 해당 정당에 통지함.
-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있어 국민경선 결과의 반영 정도는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7. 경선 투표·개표 참관 및 경선관리 경비 부담

- 경선 투표 및 개표 참관 여부, 참관인의 수는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경선일 전일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명단을 제출하도록 함.
- 국민경선의 경선선거인명부 작성, 투표 및 개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다만, 투표 및 개표 참관인 수당은 정당이 부담하도록 함.

제안이유

- 정당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국가의 부담으로 관리하되, 그 과정에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후보자 선출에 있어서 민주성을 확보하고,
-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선거에 대한 관심 제고를 통해 본선거에서의 투표참여 확대를 도모하며,
- 정당의 후보자 선출에 있어서 경선선거인 모집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정당의 후보자 선출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③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1. 국외선거법에 대한 재판관할의 명확화(신설)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제1심 재판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함.

제안이유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국외선거법의 재판관할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중대 국외선거법에 대한 여권발급 등 제한(신설)

-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여권(여행증명서를 포함함)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여권의 반납을 명하도록 함.
 - 국외에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그 혐의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 국외에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기소중지된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가 여권 발급의 거부·제한 또는 반납명령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요청사유, 거부·제한 기간이나 반납 후의 보관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는 여권 발급의 거부·제한 기간이나 보관기간이 지난 뒤에도 여권의 거부·제한 등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거부·제한기간이나 보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다시 그 거부·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여권 발급의 거부·제한기간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로 하되, 거부·제한기간 중이라도 조사 또는 수사에 응하는 등 그 요청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부·제한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은 그에 따르도록 함.

제 안 이 유

조사 또는 수사에 불응하는 국외선거법에 대한 실질적 제재조치를 통해 국외선거법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의 집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3.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외국인의 입국 제한(신설)

- 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되,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국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입국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함.

제 안 이 유

국내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외국의 시민권자 등이 재외선거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우 실질적 제재를 가하려는 것임.

4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절차사무의 합리적 개선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1.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순회접수 (§218의4, §218의5)

- 현행은 공관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나, 재외투표관리관이 지정하는 공관 소속 직원이 공관 외의 장소에서 재외선거인 본인으로부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함.
-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순회할 지역과 일시, 접수장소, 담당자를 공고하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순회접수를 위한 지원요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해당 공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순회 영사를 통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재외선거인등의 등록신청·신고기간 확대(§218의4, §218의5)

- 현행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를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로 하되,
-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2012년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후 3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로 함.

제 안 이 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을 확대하여 재외국민의 투표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3. 제한적 우편투표 허용(§218의16)

- 현행은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으나, 파병군인과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이하 ‘재외위원회’라 함)가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대만대표부를 포함함)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는 때에 우편 투표대상임을 신고하도록 함.

제 안 이 유

현실적으로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4. 공관 외의 장소에 투표소 설치(§218의17)

- 현행은 공관에만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으나, 재외위원회는 관할구역 안의 예상 투표자 수가 2만명을 넘는 때에는 공관에 설치하는 투표소 외에 2만명을 넘는 때 2만명까지 마다 1개소의 투표소를 공관 외의 장소에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공관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투표소의 구체적인 설치기준과 방법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제 안 이 유

관할구역 안에 재외선거인등의 수가 많은 경우 공관에 설치하는 투표소의 수용한계를 극복하고,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밀집 거주하는 재외선거인등에게 투표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5.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218의18)

- 현행은 국내에서 자서식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나, 프린터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하여 국내에서와 같이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우편투표는 현행과 같이 자서식으로 함.

- 재외투표소에서는 통합 재외선거인명부등을 비치하며, 구체적인 투표절차와 방법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제안이유

우편체계 미비 등으로 인한 재외선거 투표용지 반송 등의 사례를 방지하고, 재외국민의 투표절차를 간소하게 함과 아울러 투표용지 우편 송부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려는 것임.

6. 재외투표소 본인확인 신분증 범위 확대(§218의19)

현행은 재외투표소에서 본인확인에 필요한 신분증으로 여권만 인정하고 있는 것을 여권 외에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또는 거류국의 국가기관이 발급한 신분증으로 함.

제안이유

재외투표소에서 본인여부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재외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합리적 개선

1. 재외위원회 설치대상 공관의 조정 (§218)

현행은 공관마다 재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관(1개소),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4개소),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관(겸임국 79개소)에는 재외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음.

제안이유

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관에는 재외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2. 재외위원회 설치·운영기간 특례 마련 (§218)

현행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때마다 재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중에 또는 해당 재외위원회의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된 후 6월 이내에 다른 선거의 재외위원회 설치·운영기간이 시작되는 때에는 그 다른 선거의 재외위원회는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미 설치·운영 중인 재외위원회를 그 다른 선거의 재외위원회로 봄.

제 안 이 유

재외위원회 설치·운영기간이 겹치거나 서로 근접해 있는 경우 재외위원회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3.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위원회 위원 배제 (§218)

현행은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재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고, 공관의 장은 당연직 재외투표관리관이 되는데,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제 안 이 유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것은 업무부담의 정도, 상호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4. 재외투표관리관 자격 완화 (§218의2)

현행은 공관의 장이 재외투표관리관이 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제5항에 따라 공관장 외에 총영사를 두고 있는 공관의 장은 그 총영사를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제 안 이 유

대사관에 총영사를 두고 있는 주요 국가의 공관장은 본연의 직무 외에 재외선거사무를 병행하는 경우 그 부담이 과중하므로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5. 천재지변 등에 대비한 사무처리절차 마련(신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거나 그 설치·운영 중에 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까지 기능이 회복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외위원회의 설치 여부 또는 재외위원회(재외투표관리관을 포함함)의 재외선거 사무 수행의 중지·속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재외위원회의 기능이 회복된 경우에는 해당 재외위원회로 하여금 즉시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을 해당 공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재외투표를 실시하도록 함.
- 재외투표기간 중에 재외위원회의 기능이 중단되어 재외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재외투표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그 때까지 실시한 투표지를 국내로 회송하도록 함.

제 안 이 유

천재지변 등 재외위원회가 설치된 국가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사무처리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등의 개선·보완

1.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등과 관련한 서류의 전산송부(§218의7)

현행은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와 관련한 서류를 구·시·군별로 분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시 국외부재자신고서를 구·시·군의 장에게 보내도록 하고 있으나, 재외선거와 관련한 서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산자료를 보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서류 원본의 처리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제 안 이 유

재외선거와 관련한 각종 서류의 송부과정을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를 간소화하고 그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정확한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국가 의무 부여(신설)

국가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정당한 선거권자가 누락되거나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도록 함.

제 안 이 유

재외선거의 공정한 실시와 재외국민의 선거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

3. 재외선거인명부 열람 방법 확대(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신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제 안 이 유

재외선거인등이 보다 편리하게 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4.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사본교부 제한(신설)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은 교부하지 아니하도록 함.

제 안 이 유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이 없다는 점과 재외국민의 개인정보 노출우려 등을 고려하여 명부사본 교부를 제한하려는 것임.

5. 공관을 통한 재외선거인명부등의 등재여부 확인(신설)

공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송하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재외선거인등이 열람하는 방법으로 그 등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재외선거인명부등이 확정된 후에는 복수국적을

이유로 선거권 유무에 대해 법적·행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

제안이유

재외선거인등이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하고, 복수국적 보유 여부와 관련한 선거과정에서의 혼란과 분쟁을 차단하여 재외선거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6.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첨부서류 개선(§218의5)

- 현행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여권사본과 비자·영주권·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 여권과 비자·영주권·장기체류증·외국인등록증 등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되, 그 첨부한 여권 및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도록 함.
-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개시일 전 30일까지 재외선거인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공고하도록 함.

제안이유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에 있어서 복수국적 여부의 확인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7. 중복 등록신청 · 신고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218의8, §218의9)

같은 사람이 2 이상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거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중 가장 늦게 접수된 등록신청 또는 신고 내용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도록 함.

제 안 이 유

등록신청 또는 신고가 중복된 경우 그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8.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작성기준일 명확화(§218의8, §218의9)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작성기준일을 선거일 전 6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선거일 전 40일)로 하고, 그 작성기준일 후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작성기준일 현재의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에 따라 국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재외국민이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작성기준일 후에 국내거소신고를 하더라도 국내 선거인명부에는 올리지 아니함.

제 안 이 유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작성기준일을 명확하게 하고 국내 선거인명부와 작성기준일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국외선거운동과 투표·개표 절차 등의 보완

1. 위성방송시설 확대 및 불합리한 규정의 정비(§218의14)

현행은 위성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방송시설만을 방송 광고 등을 할 수 있는 방송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국외 송출이 가능한 국내에 있는 방송시설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현행에 의하면 재외선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 조정(§49)

현행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이고, 재외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후보자등록이 끝나기 전에 재외투표가 개시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앞당기도록 함.

제 안 이 유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등록기간을 앞당겨 재외선거인이 정당·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려는 것임.

3. 자서식 투표방법의 명확화(§218의16)

○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적도록 하고, 후보자의 성명과 기호를 모두 한글이나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그 밖의 언어로 적은 경우에는 그 투표는 무효로 함.

○ 다만,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언어를 병기한 경우에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적은 것으로 봄.

※ 자서식 투표는 우편투표 및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함.

제 안 이 유

자서식 투표에 사용할 수 있는 언어와 무효가 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4. 재외투표 참관방법 등의 개선(§218의20)

재외투표소에 있어서도 투표참관인의 교대참관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은 투표참관인 신고가 없거나 하나의 정당·후보자만이 신고를 한 때에는 재외위원회가 재외선거인등 중에서 4명을 투표참관인으로 선정하도록 한 것을 2명만 선정하도록 함.

제 안 이 유

재외투표소의 관리여건을 고려하여 정당·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투표참관인의 참관방법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5. 재외투표의 출구조사 금지(§218의17)

현행은 언론기관이 재외투표소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금지하려는 것임.

제 안 이 유

국내의 투표가 실시되기 전에 재외투표소의 출구조사 결과가 국내에 알려지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려는 것임.

6. 재외투표의 국내회송 불능시 처리절차 마련(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재외위원회에서 선거일에 재외투표를 개표하여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함.

제 안 이 유

천재지변 등 급변사태에 대비한 사무처리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㉑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선거권 조정(§15, §218의5)

- 현행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거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를 말함)에 있어 국외에서 투표하려는 때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고 투표할 수 있는 것을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재외국민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하고,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라 하더라도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투표할 수 없도록 함.

제안이유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는 재외국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특정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국내거소신고 제도를 활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⑥ 돈 선거 근절을 위한 금품관련 선거범죄 제재 강화

1. 매수목적 금품운반죄의 처벌대상 및 기간 확대(§230)

현행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을 그러한 금품을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으로 하고 그 적용기간도 상시로 함.

제안이유

선거인을 매수할 목적으로 돈봉투 등을 배부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처벌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매수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금품수수 행위의 50배 과태료 적용대상 확대(§261)

현행은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전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입당대가, 행사찬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금전과 물품 등의 구분없이 기부행위 제한·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제 안 이 유

금전을 제공받은 자와 물품 등을 제공받은 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금품선거에 대한 실질적 제재효과를 제고함과 아울러 선거관련 전과자의 양산을 막으려는 것임.

3. 매수죄의 공소시효 연장(§268)

현행은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로 되어 있는 것을 매수에 관한 죄 (§230~§235)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2년으로 함.

제 안 이 유

매수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함으로써 그 처벌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4. 금품 전달자의 자수자 특례 적용(§262)

현행은 매수죄 및 기부행위죄를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경우에만 그 형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매수죄 (§230①) 또는 기부행위죄 (§257①)를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가 자수한 때에도 그 형을 감면하도록 함.

제 안 이 유

조직적 금품제공범죄의 적발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형의 필요적 감면을 받는 자수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7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과 공정성 확보의 조화 도모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을 위한 규제의 완화

1. 단체 및 언론기관의 대담·토론 활성화(§81, §82)

- 단체의 경우 현행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 단체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부의 정책이나 정당의 정강·정책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옥내에서 공정한 방법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선거운동을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함.
- 언론기관의 경우 현행은 일정기간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제한을 폐지하여 언제든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제 안 이 유

대담·토론회 활성화를 통해 정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권자의 후보자나 정당의 정책에 대한 알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기간제한 폐지(§59)

- 현행은 예비후보자가 아니면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 정보의 게시 또는 전자우편 전송에 의한 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허용하고 있는 것을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기간제한을 폐지하되,
-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글(화상, 동영상 포함)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때에는 매수죄(§230①)로 처벌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는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제 안 이 유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기간제한을 폐지하되, 그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3. 비정규교육경력 게재의 제한적 허용(§64)

현행은 비정규교육경력은 전혀 게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을 비정규교육경력임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 게재를 허용 하되, 후보자등록신청시 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제 안 이 유

비정규교육경력도 유권자가 후보자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정규 학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그 게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선거의 공정성 확보 강화

1. 인터넷 언론의 불공정 보도 확산 차단(§8의6)

- 현행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인터넷언론사에 정정보도문 게재 등의 조치만 할 수 있는 것을 인터넷언론사가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때에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에는 정정보도문 게재 등의 조치를 하고 그 외에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해당 기사를 게재한 때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선거보도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기사를 보도한 인터넷언론사로 하여금 해당 선거보도에 이의신청이 있음을 표시하도록 함.

제안이유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 선거보도 확산을 차단하고, 불공정 보도로 인한 정당·후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선거관련 여론조사의 신뢰성·객관성 제고(§108)

- 현행은 보도 또는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의 경우에만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밝히도록 하는 것을 보도 또는 공표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밝히도록 함.
- 현행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선거일 후 6월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도 또는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함께 공개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수집된 설문지를 포함한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하여 보도 또는 공표하거나 언론기관이 객관적 근거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때에는 왜곡보도 금지규정(§96)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

제 안 이 유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 또는 공표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3. 보궐선거등에 있어서 부재자투표소 설치(§201)

- 현행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 부재자신고인의 투표는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관할구역에서 보궐선거등이 실시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무소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 선거구단위의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하여 선거인은 누구나 별도의 부재자신고없이 부재자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 선거가 실시되는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에 한하여 부재자신고를 하고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하게 함.

제 안 이 유

보궐선거등에 있어서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하고, 부재자투표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것임.

⑧ 국민불편 해소와 선거참여 확대를 위한 편익 증진

1. 공개장소 연설·대담관련 녹음기·녹화기 사용 제한(§79)

현행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과 관련한 녹음기·녹화기 사용에 있어 시간적·장소적 제한만을 하고 있는 것을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된 경우에는 연설·대담만을 하도록 하고 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여 음악방송을 할 수 없도록 함.

제안이유

공개장소 연설·대담과 관련하여 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한 음악방송에 따른 소음민원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정온한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 사용전화 신고(§60의3)

현행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합하여 5회 이내에서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 횟수는 현행을 유지하되,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는 1회에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전에 그 전화번호를 신고하도록 함.

제 안 이 유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일정 부분 제한·억제함으로써 문자메시지와 관련한 선거민원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3. 통합선거인명부 활용을 통한 투표편의 제공(§37)

- 투표소가 설치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거구단위 또는 구·시·군단위로 전산통합선거인명부를 구축하도록 하고,
- 선거인은 주소에 불구하고 선거구 안에 설치된 투표소 중 자신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시스템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산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투표는 재·보궐선거에 우선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되, 2012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에는 실시하지 아니함.

제 안 이 유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통합선거인명부 작성·활용의 근거를 마련 하되, 그 안정적 도입을 위하여 보궐선거등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실시 하려는 것임.

4. 투표용지의 투표소 현장 발급(§151)

- 현행은 투표용지를 인쇄소에서 미리 인쇄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선거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프린터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소에서 발급·교부하도록 하고,
-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경우의 참관 및 투표절차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제안이유

후보자 사퇴 등에 따른 대응력을 높여 무효표 발생을 방지하고, 투표용지 작성·관리와 관련한 선거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5. 인터넷이용 부재자신고 및 선거인명부 등재 확인(§38, §44)

- 현행은 서면으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는 것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정보통신망에 의한 부재자신고방법을 마련함으로써 투표참여 편의를 제공하고, 보다 쉽게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6.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음성형 선거공보 작성 허용(§65)

현행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인쇄매체인 점자형 선거공보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CD·테이프 등 음성으로 된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함.

제 안 이 유

시각장애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9]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개선 · 보완

1. 종합편성채널의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시설 포함(§70)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관리 · 운영하는 방송시설도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포함하고, 대담 · 토론회 개최 또는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방송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 실시 예정상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 토론회 개최방법 개선(§82의2, §82의3)

- 후보자초청 대담 · 토론회의 경우 현행은 초청대상이 되는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참여하여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의 정당 · 후보자와 그 외의 정당 · 후보자로 나누어 각각 개최하도록 함.
- 정책토론회의 경우 현행을 유지하되, 주제에 대한 공정한 토론을 위하여 발언횟수와 시간을 보장하며, 정책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주장의 균형이 유지되게 진행하도록 함.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를 공영방송사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중계방송하려는 때에는 공영방송사는 그에 협조하도록 함.

제 안 이 유

다수의 후보자가 동시에 참석함에 따른 토론회의 효율성 저하와 유권자의 외면을 극복하고, 찬성 또는 반대하는 토론자의 불균형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며, 중계방송을 활성화함으로써 토론회가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3. 그 밖에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

가. 신분보장 대상 선거사무관계자의 범위 명확화(§11)

신분보장 대상과 관련한 해석상 논란을 없애고, 그동안 변화된 선거제도를 반영하여 신분보장이 되는 선거사무관계자를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으로 명확하게 하고, 연설회와 대담·토론자는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함.

나. 전과기록 조회기관 제한 폐지(§49)

전국 국가경찰관서 어디서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전과기록 조회대상 국가경찰관서를 “주소지관할”로 제한한 것을 삭제함.

다. 서명·날인 등의 개념 명확화(§49·§169·§178·§219·§220)

서명·날인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기명·날인” 또는 “서명·날인”을 다음과 같이 함.

- 후보자추천서의 경우 “추천 정당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추천서”를 “추천 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로 하고,
- 선거권자 추천장과 소청장의 “기명·날인”을 “기명하고 날인”으로 하며,
- 그 밖의 “서명·날인”은 “서명하거나 날인”으로 함.

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횟수 제한 폐지(§60의3)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이 정해져 있음에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그 발송횟수 제한을 폐지함.

마. 언론기관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장소 옥내로 제한(§82)

대담·토론회가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도록 언론기관도 단체와 같이 옥내에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

바. 전화이용 음성선거운동정보 전송 금지(§82의5)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직접 통화에 의한 방법만을 허용하고 있고,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음성선거운동 정보의 전송을 전제로 수신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사.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규정 적용범위 명확화(§88)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규정의 적용범위를 현실적인 운용기준에 맞게 선거구가 같거나 겹치는 경우에만 적용됨을 명확하게 함.

아. 공휴일의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근거 마련(§274)

무소속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은 선거기간이 아닌 때라도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일반직국가공무원의 평일의 정규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함.

자. 교육감선거관련 위반행위의 선거법에 추가(§18)

교육감선거와 관련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선거법에 포함되도록 함.

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거중립요구 강화(§60)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을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 까지 사직하도록 함.

카.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범위 일원화(§68, §105)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는 사람(§68)과 거리에서 인사하는 경우 그 인원수 제한에서 제외되는 대상(§105)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주체와 같이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함.

타. 동시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주체 개선(§211)

동시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시·도지사선거와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의무적으로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업무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함.

정당법 · 정치자금법

① 정당활동 자유보장의 실효성 확보

1.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확대(정당법 §22)

국회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 교섭단체 행정보조요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함.

제 안 이 유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과 달리 당적 보유가 허용되므로 그 국회부의장을 보좌하는 직원과 실질적으로 국회 교섭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려는 것임.

2. 정당 명칭의 사용 제한(정당법 §41)

정당의 명칭에는 특정인의 성(姓)이나 이름(약칭을 포함함)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함.

제 안 이 유

특정인의 성이나 이름을 지칭하는 정당 명칭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권자의 혼란과 정당의 사당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3. 위법하게 당원 등이 되어 활동한 자에 대한 제재(정당법 §53)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경우 그 정당가입행위 뿐만 아니라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제 안 이 유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등의 정당가입 및 활동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②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근거 마련(신설)

지상파방송사는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제공한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를 5회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시간대에 방송하도록 함.

제 안 이 유

공익광고를 통해 정책선거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확산하려는 것임.

③ 정당사무의 합리적 개선

1. 중앙당의 당원명부 전산관리 근거 마련(정당법 §24)

중앙당이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당의 당원명부와 중앙당의 전산 당원명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당원명부의 효력은 시·도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하도록 함.

2. 과태료 부과·징수규정 정비(정당법 §62, 정치자금법 §5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④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1. 고액 당비 공개제도 도입(정치자금법 §4)

현행은 당비의 수입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월 1천만원, 연간 1억원을 초과하여 납부한 당비는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

제안이유

고액 당비납부자를 공개함으로써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회계보고의 자체감사 대상 확대(정치자금법 §41)

당대표경선후보자는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소속 정당의 자체 감사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함.

제안이유

당대표경선후보자의 정치자금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회계보고서의 인터넷 공개 범위 확대(정치자금법 §42)

현행은 회계보고내용 중 선거비용에 한하여 수입과 지출 명세서를 열람기간(3월) 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것을 모든 정치자금에 대해 그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공개하도록 함.

제안이유

정치자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4.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 확인의 실효성 강화(정치자금법 §49)

현행은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을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

제 안 이 유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내역의 정확성·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5. 선거관리위원회 회계사무처리 확인·점검 근거 명문화(정치자금법 §52)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함)는 정당 및 후원회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사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매년 마지막 분기 중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회계장부등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함.

제 안 이 유

현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행하고 있는 회계사무 지도·점검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6. 정치자금범죄 자수자 특례규정 신설(정치자금법 §52의2)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함.

제 안 이 유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의 용이한 적발과 효과적인 처벌을 위하여 「공직선거법」과 같이 자수자 특례 규정을 두려는 것임.

⑤ 정책연구소에 경상보조금 직접 지원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30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정당정책연구소는 회계 보고를 하는 때에 정당의 공약개발 및 이행에 관한 자체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정치자금법 §28).

제 안 이 유

정책연구소의 재정적 독립을 강화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⑥ 정치자금사무의 합리적 개선

1. 연간 모금한도액의 합리적 개선(정치자금법 §12)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경우 그 초과 모금액은 다음 연도의 모금한도액에 포함하도록 함.

2.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규정 명료화(정치자금법 §13)

국회의원후원회는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전국단위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도 평년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만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함.

3. 후원금 입금의뢰인 인적사항 조회대상 금융기관 확대(정치자금법 §17)

후원회가 후원금 입금의뢰인의 인적사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정치자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후원인의 의뢰를 받아 후원금을 입금한 금융기관이 포함되도록 함.

4. 불필요한 후원회 해산신고 정비(정치자금법 §19)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와 당대표경선후보자가 경선이 종료되어 그 신분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후원회 해산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5. 교육감·교육위원 등 선출과 관련한 기부제한 삭제(정치자금법 §32)

교육위원회 의장·부의장, 교육감·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일과 관련한 기부제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

6. 회계보고서의 첨부서류 제출규정 정비(정치자금법 §40)

정당 및 후원회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와 대의기관·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의결서 사본을 각각 첨부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함.

7. 선거비용관련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서 송부근거 마련(정치자금법 §56)

선거비용관련 범죄의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그 판결서 등본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함.

8. 반환·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인계일자 통일(정치자금법 §58)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비용의 정당 또는 공익법인 인계일자를 서로 다르게 규정한 것을 보전비용 지급일 기준으로 일치시킴.